醫療法人성애病院架橋設置要請에關한請願

審 査 報 告 書

1. 심 사 경 과

가. 청원자 성명 : 김 윤 광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5

나. 소 개 의 원 : 우일현의원, 서홍선의원

다. 접 수 일 자 : 1992. 7. 20

라. 회 부 일 자 : 1992. 7. 21

마. 상 정 일 자 : 1992. 7. 28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바. 참 고 인 : · 청원인 김윤광, 신길1동장 조창섭

· 반대진정인 박찬규, 신길1동 동정협의회총무 김재신

2. 청 원 요 지

신길1동 451－5호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성애병원에서 본병원과 8m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속건물 사이에 가교를 설치하여 달라고 가교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익성, 도시미관, 주변상대민원, 도로유지관리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고 있으나 위의사유가 모두해소되었으니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여 허가관청인 영등포구청에서 즉시 허가를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영등포구 신길1동 451－5호 의료법인인 성애병원 대표 김윤광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30여년전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사업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에 많은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의 편익보다는 당 병원의 편의가 우선하였다는 인상이 짙으며 본관과 부속건물을 왕래하기 위한 가교설치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병원에서는 가교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을 당 구청에 2회 하였으나 모두 반려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내용으로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매입을 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교를 설치함으로써 당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외부출입을 통제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환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차량과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며 인근주민의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 생각되나 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과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방관할 수 없겠습니다.

또 당 구청에서는 관계 부서간의 협조와 협의로 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가교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주요 질의 답변 요지

김형기위원 : 지금부터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 그런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 그쪽은 도로폭이 8m밖에 안되는 이면도로입니다.

이 이면 도로를 갖다가 우리 건설국장이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 구의회에서 여러분야에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는 이런 절차가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입니다.

임창수 위원 : 지금 단적으로 말씀해서 못해주겠다 하는 답변으로 들려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 위원님들의 의결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의결하시더래도 구청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용주 위원 : 신길1동 성애병원 가교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당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처리함이 타당함을 통보하고 첨부되는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홍상기 : 이의 없지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도시건설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위원장 : 홍상기)

본청원은 법에 저촉되어 불허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공익상 또는 상대민원 발생,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나 이면도로(8m)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허가하여도 공익이나, 상대민원의 발생,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당위원회에서는 확인하고 본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

6. 심 사 결 과

신길동 451－5 의료법인 성애병원대표 김윤광이 제출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

意　　見　　書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451－5號 醫療法人 성애病院에서 '92年 7月 20日 우리區 議會에 提出한 架橋設置 許可申請에 關한 請願은 裏面道路에 接한 醫療法人에서 提出한 請願으로 現行法規에 違反됨이 없다면 區廳長이 處理하여 줌이 妥當하다고 議決함.

1992年　　月　　日

永 登 浦 區 議 會 議 長